



DERI ESG Issue Report

20211224

EU 공급망 실사법 제정과 기업대응(사례)

ESG 구분: E & S

Executive Summary

목차

Executive Summary

1. 서론
2. EU의 공급망 실사법
3. 기업 대응(사례) 및 시사점

EU 공급망 실사법 현황

- EU 의회는 2021년 3월 10일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결의안 내용을 반영한 법안을 수립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의회의 결의안을 반영한 공급망 실사 법안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 발표 후 2024년 중 시행 계획임.
- EU 역내 업계는 EU 의회 결의안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고,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고 있음.
-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EU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될 것이므로 그 기초가 될 결의안 내용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기업 대응(사례) 및 시사점

- 글로벌 이니셔티브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는 IT기업 위주로 2004년에 설립된 협의체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전담하는 산업 연합체임.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IT 대기업들은 RBA에 참여하여 공급망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
- 배터리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에서 RBA에 참여하였고, RBA의 산하 협의체인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와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도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갖추었음.
- EU 공급망 실사법 도입으로 인하여 공급망 관리 및 실사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참조할 만한 사례들이라 볼 수 있음.

서정규 선임연구원

Jeongkyu.seo@daishin.com
02-769-3967

백재욱 본부장

jaewook.baek@daishin.com
02-769-3967

1. 서론

다국적 기업의 증가로 인하여 초국적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는 기업책임경영의 국제원칙을 논의·채택하였고, UN과 OECD는 기업 책임경영 원칙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로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및 'OECD 기업실사지침'을 각각 수립하였다. 그러나 기업 책임경영의 원칙과 실사지침은 기업의 이행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기업의 저조한 참여성으로 인하여 기업실사 의무화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최근 몇몇 EU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실사를 의무화한 국내법(안)을 수립하였고, 국내법 제정을 논의중인 국가들도 상당수 있으나, 각 국가별 국내법상의 기준들은 서로 달라서 EU 역내에 법적 불안정성과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법(안) 대상 기업의 대외경쟁력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가령 법(안) 적용 기준은 독일 3,000명, 프랑스 5,000명, 네덜란드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국가별로 법(안)의 적용기준부터 상이하고, 기업 국적 반영 및 자회사 포함여부 등 세부 사항도 상이하다.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기업의 인권 전반에 대한 기업실사를 의무화하였으나, 네덜란드는 아동노동에 한정하여 기업실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실사의 범위 역시 자회사 포함 여부, 간접 공급자 포함여부 등에서 국가별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실사항목 및 범위에서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렇듯 회원국들의 국내법(안)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EU 차원에서 기업실사 의무화 기준을 제안한 EU 의회의 '기업 실사 및 기업책임에 대한 결의안'의 내용 및 EU 집행위원회의 공급망 실사 법안의 제정 동향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EU 회원국들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EU 공급망 실사 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2. EU의 공급망 실사법 : EU 의회의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을 중심으로¹

EU 의회는 2021년 3월 10일 역내 또는 역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포함한 결의안을 과반수로 채택하면서(찬성 504표, 반대 79표, 기권 112표), 결의안 내용을 반영하여 EU 차원의 공급망 실사 법안을 수립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하였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관한 유럽 의회의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고 결의안(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으로 EU 집행위원회는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차년도 업무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EU 의회에는 일반적 법안제출권이 없으나 EU 의회가 EU집행위원회에 대하여 특정 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EU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거나 차년도 업무계획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결의에 포함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은 지침(Directive) 형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¹ 원문 참조: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0 March 2021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강애림(2021),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 6. 21.

이노비즈정책연구원(2021), EU의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동향과 이슈, 2021. 10. 28.

KOTRA(2021), EU의 공급망 실사, 역내 이견으로 법안 발표 지연, 2021. 11. 25.

시행 즉시 EU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과는 달리, 지침은 회원국별로 별도의 입법과정이 필요하다. 규정은 EU 회원국 내 사람(자연인, 법인)을 직접 구속하는 반면, 지침은 회원국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 법안이 도입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침에 따른 각 회원국의 국내법 제·개정을 통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EU 의회의 기업 실사 및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 내용은 국가별 법제도 도입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기에 여전히 의미가 있고, 결의안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주요 내용

(1) 실사 항목

우선, 결의안은 실사 항목에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 항목 전반을 포함하고, 거버넌스 항목 역시 포함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들의 국내법(안)들과 비교하면 기업의 환경책임을 포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결의안은 UN, OECD, ILO에서 개발한 국제원칙 및 실사지침을 벤치마킹한 기업실사 세부절차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ILO는 기업책임 중 인권 부문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UN과 OECD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윤리적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결의안은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생태계위험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를 기업실사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주로 사업장에 의한 직접 영향 또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환경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UN과 OECD의 실사지침안과도 차이가 있다.

(2) 적용 대상

결의안은 ① EU 회원국 법이 적용되거나 EU 영토에 설립된(by the law of a Member State or established in territory of the Union) 대기업(large undertakings), ② 상장된 중소기업(publicly listed small and medium-sized undertakings), ③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high-risk small and medium-sized undertakings)을 결의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상장 여부나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지 대기업이면 결의안이 적용되게 되는데 결의안에서는 대기업(large undertakings)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각 회원국 국가에서 지침에 따라 법령을 제·개정하였을 경우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또한 결의안은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high-risk small and medium-sized undertakings)에 대한 정의 규정 역시 두고 있지 않아서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다른 기준이 설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등) 채취가 공급망에 포함된 산업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침 내용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제·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추가로, 결의안에서는 EU 회원국 법이 적용되지 않고, EU 영토에 설립되지 않은 대기업, 상장된 중소기업, 고위험 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일지라도 EU 역내 시장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의안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다소 넓다고 볼 수 있다.

(3) 실사 범위

EU 회원국의 국내법(안)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사 사업장 및 1차 공급·협력업체를 실사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결의안은 실사 범위에 기업의 자사 사업장과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를 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 심사 대상 기업의 사업 운영 또는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급업체 및 하청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경우 EU에 진출한 국내 기업, EU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 소재 기업, 제3국에서 EU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 등 전 세계에 분포한 우리나라 기업이 역시 결의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실사 범위는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기업의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가 진행될 경우 EU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EU 역외에서 생산·매입하는 중간재 또는 완성품에 대해서도 기업실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의무 사항

결의안은 ①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no risk statement) 또는 ② 관련 위험의 예방·완화를 위한 기업실사 보고서를 온라인 플랫폼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때 위험이 없음을 증명하는 성명서는 해당 결론 도출의 근거를 포함하여야 하고, 기업은 신사업 진출, 신시장 개척 등에 따라 인권 및 환경 위험이 변하는 경우 성명서를 재검토할 의무가 있다. 관련 위험의 예방·완화를 위한 기업실사 보고서는 기업실사의 수립·이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고, 기업실사와 관련된 데이터, 정보, 방법론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 법적 제재

결의안은 EU 회원국들에게 결의안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결의안 위반 시 기업에 법적 제재를 부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이 인권·환경 위험의 예방을 위한 기업실사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 나아가 기업실사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책임이 전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에 의한 실제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기업은 위험의 해소 또는 최소화를 위한 구제 절차를 수립하고, 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결의안은 과징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총매출액' 대비 비례적 과징금 부과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총매출의 최대 0.35%에서 2%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독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총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네덜란드 등의 EU 회원국 국내법(안)과는 달리 기업 규모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나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결의안은 위반 기업을 공공조달, 국가 지원, 대출, 수출 신용기관 등의 공공지원제도에서 일시적 또는 무기한으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 제재 수단을 함께 제안하고 있다.

표1. EU 의회의 기업 실사 및 기업 기업 책임에 대한 결의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 대상	① EU 회원국의 법에 지배되는 대기업 ② EU 영토에 설립된 대기업 ③ EU 소재 모든 상장 중소기업 및 고위험 산업 중소기업 ④ EU시장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기업 · 민간·국영 기업을 포괄하고, 임직원 수 또는 매출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하지 않음	
국제 기준	UN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OECD 기업실사지침,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 SDGs, EU그린딜, 파리협정 등	
실사 항목	인권 및 환경 전반	
실사 범위	자사 사업장, 사업관계사(자회사, 공급업체, 하청업체 등 기업과 직접 연계된 업체)	
의무 사항	기업은 성명서 또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EU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해야 함	
	성명서 제출 (위험이 없는 기업)	기업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지 않거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또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은 성명서 공개 · 기업이 실사를 통해 기업의 '모든 직접 공급자'가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에

		의거한 기업실사를 수행한다는 점을 확실시한 경우가 이에 해당
	기업실사 보고 (그 외 모든 기업)	기업실사 전략의 정기적 수립 및 검토에 대한 보고서 제출 ① 위험 분석을 통해 식별한 인권·환경 위험의 심각성, 가능성, 긴급성 및 해당 결론에 대한 데이터, 정보, 방법론 공개 ② 기업의 가치사슬에 대한 지도화(mapping) 및 공급 협력 업체명, 지역, 상품·서비스의 종류 등 관련 자료 공개 ③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예방·완화·종료하기 위한 기업 정책과 실사절차 수립 및 공개 ④ 관련 위험을 동시에 해소할 수 없는 경우,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따라 위험의 우선순위화 진행
법적 제재	EU 회원국별로 국가법에 따라 재정적으로 금전적·제도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 · [과징금] 기업 총매출액 기준 비례적 벌금 부과 · [행정 제재] 공공조달, 국가 지원, 대출, 수출 신용기관 등의 공공 자원제도에서의 일시적 또는 무기한 사업제외 등	

자료: 강애림(2021),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1. 6. 21.

2) 제정 동향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6월에 공급망 실사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룬 결과 발표 시기를 2022년 2~3월까지 연기하였다. 프랑스가 자국의 공급망 실사법을 마련했을 당시 업계의 극심한 반대로 법안 채택까지 4년이 소요되었는데, EU 회원국 27 국을 아우르는 법안 도출이 난항을 겪는 것은 예상가능한 범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내 업계는 EU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내 실사 적용 대상과 범위, 실사 항목, 의무 사항, 입증책임 전환, 민사책임 인정 등에 대해 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결의안의 적용 대상과 관련해 업계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더라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결의안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협정 등 '기후변화'를 실사의 환경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또한 책임소재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실사범위에서 제외하거나 특정한 기업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기업 의사결정에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거버넌스 관련 규정을 실사 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업계는 기업의 의사결정 지연 및 기업활동 위축, 투자 감소 등을 이유로 공급망 실사 규정과 거버넌스를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과징금, 행정제재 등의 법적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민사책임부과,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서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듯 현재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은 그 내용에 대한 업계의 전반적인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의 법안 발표 시기가 다소 지연된다 하더라도 발표 시기가 다를 뿐 EU가 멀지 않은 시기에 공급망 실사를 시행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설령 역외국 기업에 공급망 법안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 바이어들로부터 동등한 수준의 실사 이행을 요구받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로서는 EU 차원의 기업실사 의무화에 충실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기업 대응(사례) 및 시사점

현재 해외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국내 IT대기업들은 공급망 관리 방안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고, 글로벌 IT, 자동차 기업들과 거래하는 부품, 소재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등 글로벌 공급망에 포함된 국내 기업들은 EU 공급망 실사 법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몇몇 IT대기업들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최신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협력업체 관리 규범을 공유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의 활발한 움직임을 전개 중이다.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여기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IT대기업과 배터리업계 기업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참여하고 있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있다. RBA는 IT기업 위주로 2004년에 설립된 협의체로서 공급망내 기업들의 ESG경영 수준 제고, 협력업체 행동규범 공유, 협력업체 평가 및 교육 등을 위해 협력하는 기구이다. 산하에는 분쟁광물관련 공급망을 관리하는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노동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RLI(Responsible Labor Initiative), 공장 단위의 협력업체 관리를 위한 RFI(Responsible Factory Initiative) 등을 두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는지 살펴보자.

1)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원칙을 '모든 부품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합니다'라고 내세운다.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에 환경안전, 노동인권, 에코파트너 등의 기준을 고려한다. 환경안전 측면에서는 산업안전, 소방시설, 산업보건, 유해물질, 환경시설 등 23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소화설비, 위험물 및 폐기물, 오폐수 시설 등의 9대 필수 준수 항목을 두고 있다. 노동인권 측면에서는 자발적 근로, 근로시간 규정 준수, 차별 금지 등 19개 조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국어 계약서 체결, 아동 노동 금지, 미성년 근로자 보호, 법정휴식/휴가 보장 등의 8대 필수 준수 항목을 두고 있다. 또한 제품 환경 정책, 교육 및 훈련,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에코파트너 인증을 취득한 협력업체와만 거래한다.

협력업체들은 연중 자율 평가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매년말 동사가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협력업체에 통보하면 협력업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동사는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RBA 검증 기준에 따라 협력업체를 모니터링하고 1차 협력업체를 통해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OECD에서 제시한 분쟁지역 광물의 책임있는 공급망에 대한 실사지침' 기반으로 광물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RMAP(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인증을 받은 제련소와 거래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이 광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2)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공급망 관리에 ESG 경영원칙을 강력히 적용하며, 공급망 ESG관리, 동반성장, 분쟁광물관리를 주요한 공급망 관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신규 공급망 선정과 평가에 ESG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RBA를

기반으로 협력업체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표준계약서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2020년에는 협력업체의 업종, 규모, 인력 현황에 맞추어 1:1 방문 RBA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동사는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연합체인 '에코 얼라이언스(Eco Alliance)'를 출범시켜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 중이다. 폐기물, 온실가스 등 환경정보를 회원사간에 교류하도록 하고, 환경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에코 얼라이언스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SK하이닉스는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에도 참여하여 책임있는 광물자원 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원자재 공급사 변경 시 인증받은 원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통합제품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물질 데이터를 관리하며 구매하는 원자재에 분쟁광물 함유 여부를 검토한 후 합법적이고 인도적으로 채굴한 원자재를 구매한다.

동사는 직접 거래 관계가 없는 2차 이상 협력사를 대상으로도 동반성장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공급망 생태계 전반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2·3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납품대금지원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3)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LG디스플레이의 경쟁력'이라는 상생철학을 표방하며 동반성장지수 6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1, 2, 3차 협력업체 간에 수평적인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新상생협력체제'를 도입하여 금융, 기술, 의료복지 3가지 분야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1,000억원의 상생기술협력자금을 조성하거나 2, 3차 협력업체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금융을 지원하고 장비 국산화 공동기술 개발, 상주 협력업체 직원 발병시 차별없는 의료 지원 등의 상생협력활동을 펼친다.

동사는 RBA에 가입하여 국내외 사업장, 협력업체까지 RBA 행동규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망 전반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4)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산업은 원재료 특성상 분쟁광물 이슈가 있고 윤리적이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가 타 산업보다 중요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배터리업계 최초로 RBA에 가입하여 신규 협력업체 선정 단계에서부터 공급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정기 ESG 평가 및 리스크 개선 이행점검을 통해 공급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2016년 국제 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을 통해 배터리 소재의 하나인 코발트 공급망의 아동노동 이슈가 제기된 이후, 책임있는 공급망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현지 소규모 영세광산을 직접 실사하여 아동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 내에 공개한 바 있다. 2019년에는 RBA 산업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의 회원사로 가입하여 분쟁광물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 사례를 살펴보았다. 공급망의 ESG 이슈 전반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도 해외 기업들과 ESG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RBA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활동 중임을 확인했다.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산업 내에서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분쟁광물 이슈가 화두가 되었는데 국내 기업 중 LG에너지솔루션이 RMI에 가입하여 글로벌 수준의 분쟁광물 관련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갖춘 점이 인상적이었다. 공급망 관리 및 실사 대비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참조할 만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Compliance Notice

〈ESG Issue Report〉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주)대신경제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 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내용에 관하여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 등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이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